내부통제 관련 내규 개정

1 개정 배경 및 필요성

- □ 권익위, `13년 반부패경쟁력평가 관련 제도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행동강령 등 내규 정비
 - 행동강령(운영지침), 내부자신고, 자문변호사선임, 청렴옴부즈만, 정보공개세칙
 - * `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`13년 자체감사시, 최근 윤리경영 추세 등을 반영하여 내규 재검토 권고

2 주요 제·개정 내용

- □ (임직원 행동강령 및 운영지침) ECA로서의 당행 특성 및 최근 동향 반영
 - 뇌물공여기업 앞 여신을 제한하는 OECD 반부패협약 권고 준수 의무 선언
 - **직무담당 기업** 전체로 개인적 **투자행위 제한** 확대
 - **알선·청탁** 등에 대한 **대가성 요건 삭제**하여 최근 공직윤리 동향 반영*
 - * 김영란법 (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, `13.7 국무회의 통과)
- □ (내부자신고세칙) 공익신고자 보호제도* 반영, 내부자 익명신고 기반 마련
 - * 국민의 건강과 안정, 환경,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
 -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,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수단 마련
- □ (자문변호사선임세칙) 제안서 수령, 실무평가 등 선임절차를 강화하고 징계 전력 변호사 위촉제한 등 청렴성 검증 도입
 - * 현행 "국제계약 자문변호사 선임세칙"을 폐지하고 국내·외 변호사 선임을 함께 규율하는 동 세칙 제정
- □ 기타 청렴옴부즈만과 정보공개세칙 개정
 - 옴부즈만 회의 운영 강화, 홈페이지 정보공개 범위 확대